

보도자료

2016. 6. 15.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김영욱(☎02-3480-1368)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2016. 6. 15. 오전 11:0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제6차 정기회의

- 2016. 6. 15. 11: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6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징후 발견 시 기업가치가 심히 훼손되기 전에 적시에 회생절차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
- 위원회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접목시켜 기업구조조정절차 일원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177호, 2016. 8. 30. 시행)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 회생절차로의 진입 유도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기업회생절차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견련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부여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자금 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를 제시할 필요
- 패스트트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간이회생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가 이후 임원 추천권 등을 부여함

□ 제6차 정기회의

- 일시·장소 : 2016. 6. 15. 11:00 ~ 12: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법원 도산실무 변화(보고안건),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 방안(심의·의결안건)

□ 건의문 의결

○ 건의문 전문

- 기업회생절차로의 조기 진입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신규자금 대여채권(신용공여 포함)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지위가 달라지는 점이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으므로, 견련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현행 조사보고서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보고서에 신규자금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신규자금지원 대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패스트트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간이회생 대상 사건을 확대(부채 30억 원 이하 ⇨ 부채 50억 원 이하)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 비용의 최소화 등을 도모할 필요 있음
- 채권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주요 출자전환 주주(기존 채권자)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가 이후 회생회사의 임원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건의문 주요내용

㉠ 건론평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지원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부여

-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이른바 건론평산의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으로 인정됨(법 제6조 제4항, 제9항, 제7조 제1항)
- 신규자금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0조 제7항에 의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건론평산 절차에서 재단부족의 경우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기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하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지위를 상실
- 이와 같이 신규자금 대여자채권(신용공여 포함)에 대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지위가 달라지는 점이 회생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으므로 건론평산에서도 회생절차에서와 동일하게 회생절차에서의 신규자금 대역에 기

한 재단채권을 다른 일반재단채권에 비해 우선하는 변제순위에 두어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필요 있음

**②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Sale & Lease back 사업 활성화

-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인가 후 영업용 자산을 매각하여야만 회생담
보권 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영업용 자산이 매각되면 회사의 영
업기반이 상실되어 앞으로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는 부동산
을 매각하더라도 영업기반 유지를 위해 그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는 방식
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의
필요성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회사의 영업용
자산에 관한 ‘매각 후 재임대방식’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 사업의 도입으로 회생기업의 영업용 자산 매각이 수월해지고, 회생담
보권 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Exit Financing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한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전용자금 활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가 후 기업(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에 대
하여 업체당 연간 10억 원(3년간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
해주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신규자금지원이 절실한 기
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여유 담보물 최대 활용 방안

- 신규자금 지원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설정여유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현재 실무에서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장래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집합채권 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신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계약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매출채권 양도계약의 경우 개시 이후의 매출채권에는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대부분 회생회사의 유일한 가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규 자금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를 제시할 필요 있음

- 현행 조사보고서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고, 조사 근거자료도 채무자 측에 편중되어 있으며, 조사보고서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제시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됨

- 조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신규자금 대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신규자금지원 필요성 및 그 적정 규모에 관하여도 조사보고서에 제시할 필요 있음

④ 패스트트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간이회생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

- 패스트트랙 시행 이후 회생절차의 신속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워크아웃에 비하여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

- 더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는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현실 ⇨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 운용이 필요함

- 현재 부채 30억 원 이하의 채무자회사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한 간이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속성, 비용의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데, 이를 부채 50억 원 이하의 채무자회사에게도 확대 실시 할 필요 있음(시행령 개정사항)

5]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가 이후 임원 추천권 등을 부여함

- CRO 역할 확대

- 채권금융기관 추천 CRO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업무를 주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DIP 파이낸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구조조정 전문가 수준의 CRO가 확보되어야 하고, CRO의 업무권한 확대 및 실질화가 수반되어야 함
- 자금수지점검과 회생절차 보조의 역할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과거 주요 사건에서 채권단이 추천한 CRO에게 구조조정업무에 대한 우선적 권리, 자금관리인의 선임권한,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등의 주요 권한을 부여한 사례(쌍용건설, 응진홀딩스)를 참조할 수 있고, 기촉법 워크아웃절차에서 자금집행위원회와 유사한 운용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주협의회 구성(인가 이후 관리)

-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주요 출자전환 주주(기존 채권자)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 주주협의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인은 협의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 주주협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사전에 협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안건 상정 단계에서 출자전환 주주들의 의사 반영하도록 함

□ 참고 : 회생·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

○ 개요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 11. 28. 법원행정처에 설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제1차 정기회의(2013. 11. 28.)

-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

○ 제2차 정기회의(2014. 4. 22.)

-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제3차 정기회의(2014. 12. 17.)

-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

○ 제4차 정기회의(2015. 6. 16.)

-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

○ 제5차 정기회의(2015. 12. 14.)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건의